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도 재 현
 ■ 확인자 : 유 재 열

도재현
유재열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종로소방서 (종로119안전센터)	INOCOM SCI	2016.03.	0763KM198 등 66개	M15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 / 부)	적합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 / 부)	적합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 / 부)	적합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 / 부)	적합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 / 부)	적합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 / 부)	적합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 / 부)	적합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 / 부)	적합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충전기 안전관리 등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

도 재 현

■ 확인자 :

유 재 열

도재현
유재열

소방서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관리번호	안전관리자 (자격현황)
종로소방서 (종로119안전센터)				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제5조제1항 (공기품질 검사)	○ 공기품질검사 연 2회 이상 실시 - '17년 1회, '18년 2회 공인시험기관 검사 현황	(적 / 부)	해당없음
제6조제1항 (검사결과 관리)	○ 공기품질검사 결과 관리 - 사용 중지, 수리 이력, 검사결과 기록	(적 / 부)	해당없음
제7조제1항제1호~2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기 점검대장 기록관리 - 1주일에 30분 이상 가동 여부	(적 / 부)	해당없음
제7조제1항제3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공기충전기 필터 연 2회 이상 교체 - 교체 시기 적정성(공기품질 시료채취 전)	(적 / 부)	해당없음
제9조제3항제2호 (고압용기의 파기)	○ 고압용기 파기방법 적정성 - 압착, 절단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 / 부)	해당없음
제9조제3항제3호 (공기충전기의 파기)	○ 공기충전기 파기방법 적정성 - 주요부 타격으로 파기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 / 부)	해당없음
제12조제1항 및 제2항 (충전실 및 정비실 관리)	○ 충전실 및 정비실 설비 점검 적정성 - 측정장비 검·교정, 정기점검	(적 / 부)	해당없음
제13조제1항 및 제2항 (예비용품 관리)	○ 공기호흡기 10 세트 및 소모품 보유 - 공기충전기 관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	(적 / 부)	해당없음
개인보호장비 지급실태 (방화복, 안전화, 보호장갑)	○ 개인별 기준대비 지급수량 적정성 - 예비수량 확보여부 및 보관·관리상태	(적 / 부)	해당없음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